

제337회 경상북도의회임시회

제1차 건설소방위원회

2023. 2. 1.(수)

경상북도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검 토 보 고 서



건 설 소 방 위 원 회
전 문 위 원 실

경상북도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이선희 의원 대표발의)

검 토 보 고 서

1. 발의자: 이선희·백순창·박영서·김희수·남진복·한창화·

박승직·이우청·박순범·김창기·최병준·이형식 의원(12명).

2. 제안이유

- 경상북도에서 개최되는 공연·축제 등 문화예술 활동 및 체육 활동 등의 옥외행사 시 명확한 주최·주관자가 없이 군중이 모이는 행사의 사고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

3. 주요내용

- 옥외행사 적용범위에 주최·주관자가 없는 행사를 포함하여 규정(안 제3조)
-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하여 다른조례와의 관계규정 (안 제3조의2)

- 주최·주관자가 없는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옥외행사 관련부서에서 계획을 수립·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(안 제5조의2)
- 주최·주관자가 없는 옥외행사에 대한 안전관리계획 신고의무를 관련부서의 장으로 규정(안 제6조)

4. 관련법령

- 「공연법」 제11조

5. 관련부서 협의

- 법제심사: 붙임
- 규제심사: 심사대상에 해당하지 않음
- 부패영향평가: 붙임
- 해당부서 검토의견: 붙임
-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: 붙임

6. 입법예고 결과

- 예고방법: 경상북도의회 홈페이지 공고
- 예고기간: 2023. 1. 26. ~ 1. 30. 경상북도의회 공고 제2023-13호
- 의견제출: 의견 없음

7. 검토의견

가. 조례제정 필요성

- 경상북도에서 개최되는 공연·축제 등 문화예술 활동 및 체육 활동 등의 옥외행사 시 명확한 주최·주관자가 없이 군중이 모이는 행사의 사고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

나. 조례안의 주요 내용

- 옥외행사 적용범위에 주최·주관자가 없는 행사를 포함하여 규정함(안 제3조)
-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하여 다른조례와의 관계를 규정함(안 제3조의2)
- 주최·주관자가 없는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옥외행사 관련부서에서 계획을 수립·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함(안 제5조의2)
- 주최·주관자가 없는 옥외행사에 대한 안전관리계획 신고의무를 관련부서의 장으로 규정함(안 제6조)

다. 종합의견

- 금번 「경상북도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은 경상북도에서 개최되는 각종 공연·축제 등 문화예술 활동 및 체육활동 등의 옥외행사 적용범위에 주최·주관자가 없는

행사를 포함하여 규정하고, 주최·주관자가 없는 옥외행사시 필요한 경우 옥외행사 관련부서에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·시행할 수 있도록 하며, 안전관리계획 신고의무를 관련부서의 장으로 규정함으로써 사전에 사고예방 및 안전관리를 통하여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조례로서

- 제정 취지와 내용, 관련부서 협의의견 반영 등 전반적으로 적절한 것으로 사료됩니다.
- 다만, 비용추계는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우나, 향후 조례안 시행으로 비용수반 사항 발생시 사고예방 등을 위하여 적정 규모의 예산이 투입 될 수 있도록 예산부서 재정협의를 필요 합니다.

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.